

2. 언어병리학과 석사학위과정 내규

1) 입학전형

가. 입학전형기준 및 배점

◆ 석사과정

- ▷서류 : 40 (연구계획 및 기초수학능력, 지원동기 등)
- ▷구술, 면접 : 60 (전공지식, 전공수학능력, 인성 및 태도 등)

◆ 통합과정

- ▷서류 : 40 (연구계획 및 기초수학능력, 지원동기 등)
- ▷구술, 면접: 60 (전공지식 및 수학능력, 전공 관련 실무 경험, 인성 및 동기과 태도 등)

나. 전형위원 구성

- ▷서류전형 : 본교 전임 교수 3명
- ▷구술, 면접 : 본교 전임 교수 3명

다. 면접의 진행 방식

- ▷ 시험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공에 관한 영어 지문을 주고 읽을 시간을 준 뒤 시험 장소에서 전공에 관한 수학 능력이 있는지, 전공 기초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구술시험과 학과 지원 동기와 학업계획 등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2) 이수 과목

<보충부과학점 및 석사이수학점 관련 학칙>

관련 규정	내 용
대학원 학칙	제 23 조 (보충과목 이수)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21조 규정이 정하는 수료 학점 이외에 추가로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 21 조 (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통합과정으로 입학하거나 전환한 학생이 입학 후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5.2.6., 2016.2.16.)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개정 2013.11.20., 2015.9.18.) ③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6.2.16., 2019.9.11.) ④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6.2.16.)

	<p>제22조(학기당 취득학점)</p> <p>①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3.2.25., 2017.2.8., 2019.1.10., 2019.9.11., 2020.9.11.)</p> <p>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은 학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원생이 최대 3학점까지 학점을 추가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6.4., 개정 2021.3.3.)</p> <p>④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연구생은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4.12.22., 2020.6.4.)</p>
<p>대학원 학칙시행세칙</p>	<p>제 20 조 (보충과목)</p> <p>① 각 대학원 각 과정에서 학과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학생에 대하여 제1학기 수강신청전에 3학점 이상의 보충과목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보충과목의 부과는 최대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29.)</p> <p>1. 하위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의 상위학위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2.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p> <p>② 보충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학칙 제22조에 의한 학기당 취득학점 외에 3학점(교육대학원 4학점)까지 더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p>

가. 학칙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보충 및 학과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나. 의사소통장애 연구방법론 I, II 과목은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단, 해당학기에 최대이수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강으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다. 연구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라. 학부전공자는 지도교수님과 상의 하에 교내 또는 교외 실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교과목은 3학기 (언어진단실습) 또는 4학기(언어재활실습) 중 1회 수강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봄학기 이수 시 교과목명 뒤에 로마자 I, 가을학기 이수 시 교과목명 뒤에 로마자 II가 붙음.)

마. 학생은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되, 수강을 권장하는 학기 및 과목은 다음과 같다.

▷ 타대학원 교과목 이수: 해당사항 없음

▷ 선수과목 이수: 언어기관해부생리, 의사소통장애 연구방법론 I, 유창성장애 과목의 경우, 언어병리학 기초과목인 의사소통장애개론을 선수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료판정 시 교과목 이수: 필수과목 및 선택/보충 과목 중,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봄학기 입학생>

학기	필수과목	선택/보충 과목	취득학점
1 st 봄	조음음운장애 세미나 유창성장애 세미나 언어발달장애 세미나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기관 해부생리	13
2 nd 가을	음성장애 세미나 언어재활관찰	언어발달 세미나 •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언어재활	15
3 rd 봄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세미나 언어진단실습	▪ 의사소통장애 연구방법론Ⅱ • 청각장애 언어재활 말운동장애	14
4 th 가을	신경언어장애 세미나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실습	▪ 의사소통장애 연구방법론Ⅰ(청강) 자폐범주장애 언어재활 • 보완대체의사소통	14
5 th	논문세미나 (논문등록)		총 56학점

- 학부 비전공자 보충과목
 - 필수로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학기에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강으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 1) 격년 개설과목으로 입학년도에 따라 수강과목, 수강학기 및 교과목 구분이 상이함

<가을학기 입학생>

학기	필수과목	선택/보충 과목	취득학점
1 st 가을	음성장애 세미나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발달 세미나 •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언어재활	13
2 nd 봄	조음음운장애 세미나 언어재활관찰 언어발달장애 세미나 유창성장애 세미나	언어기관 해부생리	15
3 rd 가을	언어진단실습 신경언어장애 세미나 언어재활현장실무	▪ 의사소통장애 연구방법론Ⅰ • 보완대체의사소통	14
4 th 봄	언어재활실습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세미나	말운동장애 구개열 언어재활 • 청각장애 언어재활 ▪ 의사소통장애 연구방법론Ⅱ(청강)	14
5 th	논문세미나 (논문등록)		총 56학점

- 학부 비전공자 보충과목
 - 필수로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학기에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강으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 1) 격년 개설과목으로 입학년도에 따라 수강과목, 수강학기 및 교과목 구분이 상이함

마. 학생은 3학기 종료 후부터 4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지 '교과목 이수 확인서'를 학과장님께 제출하여 국가자격증 시험과목 이수에 문제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붙임1]

3) 임상관찰 및 임상실습

▷ 언어재활사 자격증 규정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총 90시간 이상(교내에서 실시하는 실습 시간이 4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1) 예비관찰

가. 관찰시기 : 모든 석사과정 학생들은 "임상관찰"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1학기 동안 성인 70세 이상 2명, 아동 만 3-6세 2명을 상호작용하고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찰시간 및 사례 : 상호작용은 한 케이스당 최소 1시간(총 4시간) 하여야 한다.

(1) 학교에서 지정하는 관찰이 아니라 직접 어린이집, 복지관, 센터 등등에 나가 봉사 또는 관찰

(2) 사례 : 다음 사례들이 포함

▷ 성인 70세 이상 2명

▷ 아동 만 3-6세 2명

▷ 상호작용

다. 관찰 일지

날짜, 대상 정보, 상호작용의 주제, 상호작용시 나누었던 발화 내용, 느낀점 등을 정리하여 사례 당 1개의 관찰 일지를 제출한다.

3-2) 임상관찰

가. 관찰시기 : 모든 석사과정 학생들은 "임상실습"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선수과목으로 "예비관찰" 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관찰시간 및 사례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과에서 정해주는 치료실에서의 관찰

(2) 사례 : 다음 사례들이 포함

▷ 조음장애 1명, 유창성장애/음성장애 1명

▷ 아동언어장애 1명, 성인언어장애(중학생 이상) 1명

▷ 진단 회기 1회, 치료회기 1회

다. 제출 보고서 (종합시험 응시 요건)

(1) 임상 관찰 기록지 (사례당 1개)

우선 관찰기관의 임상가에게 제출하고, 임상가의 지도에 따라 수정한 보고서를 임상가의 확인도장이나 서명을 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담당교수에게는 각 기관의 관찰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상 관찰 기록지에는 자세한 훈련활동 내

용을 그 목적과 함께 기술한다.

(2) 관찰 시간 요약지

성적을 받는 학기에 임상관찰시간 요약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3-3) 임상 실습

가. 임상실습 시간 : '언어재활사 자격증 규정'에 따라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실습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되도록 1학기는 교내수업, 2학기는 교외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나. 임상실습 대상 : **최소한 아동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

- * 성인대상 실습에 한하여,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부치료사의 역할을 실습으로 인정.
 - .부치료사의 역할: 치료자료 준비 및 주치료사 보조와 관련된 역할 수행.
 - .해당 환자의 모든 치료 회기에 참여.
 - .전 치료회기 중 2회 이상 직접치료 실시.

다. 임상실습 장소

- ▷ 이대 발달장애아동센터
- ▷ 복지관 또는 이화여대 목동병원부속 언어치료실
- ▷ 그 외 학과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기관
 - 한마음복지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성미산학교, 지역노인 관련기관, 아산병원 신경과, 삼성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 기타.

* 실습기관 배치 시, 학생의 학과활동 기여도

(예, 학과조교, 연구조교, 프로젝트/학협회활동 참여도 등) 고려됨.

라. 임상실습 내용 : 진단 및 치료

마. 제출 보고서

- ▷진단계획서 : case file 검토 후 1회
- ▷진단보고서 : 진단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언어치료계획서 : 진단보고서를 바탕으로 장.단기 치료계획 설정
 - 중간에라도 계획이 수정될 때는 그때마다 다시 작성하여 제출
- ▷주별계획서 : 매주 1부씩 제출
- ▷진전보고서 : 학기말에 1회 제출 (성적마감일 1주일 전까지)
 - 처음에 설정한 장.단기 치료계획에 근거하여 작성
 - 보고서 양식은 부록에 있는 것을 참조하되, 사례의 성격에 따라 수정 가능함.

바. 임상실습 참여자격: 타 학생의 진전보고회에 4회 이상 참석(참석 확인 필수[붙임2-1])

-> **불참 시, 실습 감독자에게 지도교수 날인 찍힌 사유서 제출**

※ **유자격자의 관찰 및 실습**

1. 임상관찰은 학부보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에서의 관찰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30시간을 이수** 하여야 함
2. 타 대학(원)에서의 언어치료 실습 시간은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학과목에서 요구하는 실습시간의 **45시간 혹은 1학기(3학점)만을 인정함**. 따라서 '언어재활사 자격증 규정'에 따른 언어진단실습 혹은 언어재활실습 중 **1학기(3학점)에 해당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1) 실습 과목 모두 B학점 이상으로 나온 성적표
 - 2) 각 실습 감독자에게서 서명 받은 서류 복사본
(단, 감독자는 국가 자격증 1급 유자격자야 함 - 자격증 번호 기재)

4)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 종합시험

가. 시험운영 원칙

(1) 시험응시 자격 기준 :

- 실험 설계 및 통계분석을 수강해야 함.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 임상관찰에 대한 학과내규를 시행하고 학과에 내규 시행표를 제출한 자

(2) 시험출제위원 : 본교 전임교수

(3) 시험과목 : 5과목

▷언어장애

- 언어발달장애: 아동언어장애 단일대상연구설계 포함
- 신경언어장애: 신경언어장애 모수통계 실험설계 포함

▷말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포함

(4) 합격기준 : 과목 당 70점 이상

불합격했을 경우는 해당 과목만 다음 학기인 4학기에 재시험

재시험에도 불합격 했을 경우 그 다음 학기 연구등록 후 다시 재시험

(5) 시험 실시 시기 : 매 학기 말 학과에서 공고

(6) 불합격자 : 불합격 과목만 다음 학기에 재시

(7) 통합과정

- 자격시험 응시자격 :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까지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 종합시험 응시자격 :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 자격시험의 시험운영 원칙은 석사과정 학칙에 준한다.
- 종합시험의 시험운영 원칙은 박사과정 학칙에 준한다.

5)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 영어시험

가. 합격 기준

- . TOEFL : 530(CBT : 200이상/ IBT 72점) 이상
- . TOEIC : 675 이상
- . TEPS : 569 이상
- . IELTS : 5.5 이상
- .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 프로그램: 언어병리학과 기준 점수: 70점 또는 70%ile 이상

6) 논문지도 및 학위청구 논문

가. 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

입학 후 첫 번째 학기 말에 해당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성적 제출일까지 학과에 제출
나. 지도교수 자격기준: 학칙에 준함(만약 외부교수의 경우에는 과 교수회의에서 결정)

다. 지도교수의 역할: 전반적인 학사 및 논문 관련된 사항들을 지도

라. 지도교수 변경 시기 및 절차: 3학기 이후 변경 시, 전-후 지도교수 허락을 받아서 성적 제출일까지 학과에 제출

마. 논문예비발표(proposal)

(1) 발표 시기

- ▷ 학기 초 또는 학기말에 학과에서 공고
- ▷ 발표자는 학과에 예비발표 신청서 제출

(2) 논문예비발표 자격: 반드시 다음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자

- ▷ 논문 세미나 과목 청강 이상
- ▷ 학칙에서 정하는 일정수의 학점 이수
- ▷ 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 합격
- ▷ 타 학생의 논문예비발표에 2회 이상 참석(참석확인 필수) [붙임2-1]
- ▷ 타 학생의 논문심사에 2회 이상 참석(참석확인 필수) [붙임2-1]

(3) 논문계획서 내용

-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선행연구, 연구 문제
→ 이론적 배경은 지도교수에게만 제출
- ▷연구방법 : 대상자 선정, 연구절차,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설계, 예비연구 결과
- ▷예상되는 연구 결과

(4) 논문발표자 준비

발표일 1주일 전까지 참여할 모든 선생님들께 계획서를 한 부씩 드려야 하며, 다른 재학생들도 미리 읽어볼 수 있도록 요약본(1-2쪽) 준비

(5) 연구내용의 변경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선생님들께서 허락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논문계획을 다시 발표하여야 함.

라. 학위청구논문

(1) 심사위원 자격 : 학칙에 준함(본과 전임교수 이외의 경우는 과 교수회의에서 결정)

(2) 심사 시기 : 학기 초 또는 말에 지도교수의 제청에 의해 심사위원들이 동의하는 날

(3) 심사결과 :

▷ 통과

▷ 수정 후 통과 : 학과의 소정양식에 수정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교수나 지도교수에게 수정내용을 확인 받아서 논문제출

▷ 재심 : 1심 후 2주일 정도 지나서 실시. 학생은 수정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심사 받음. 심사보고서는 1심, 2심 각각 제출.

7) 장학생 선발

지도교수의 추천이나 교수회의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단, 학생이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한다.

- 학과 조교 장학금

: 학기말 전 대학원생 대상 신청 받음

학기말에 조교 장학금 지급

8) 대학원 학사운영 위원회

(1) 구성: 학칙에 준하여 구성한다.

(2) 심의절차: 학칙으로 정한 심의 사항을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9)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1/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규정 (<http://www.kuksiwon.or.kr>)

▶ 응시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응시자격
1급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안내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1.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1급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언어재활기관의 장이 1급 언어재활사인 경우 또는 언어재활기관이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급 언어재활사를 2급 언어재활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6의2)

구분	교과목	비고	
필수과목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 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선택과목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 선택과목 중 9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	--	--

▶ 시험일정

시험종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 형식
1급 필기	6	140	1점/1문제	14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2급 필기	5	150	1점/1문제	15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 시험시간표

1) 1급 언어재활사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신경언어장애(20) 2. 언어발달장애(20) 3. 유창성장애(20) 4. 음성장애(20) 5. 조음음운장애(20)	100	객관식	08:30	09:00~10:30(90분)
2교시	1. 언어재활현장실무(40)	40	객관식	10:50	11:00~12:00(60분)

2) 2급 언어재활사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신경언어장애(30) 2. 유창성장애(25) 3. 음성장애(25)	80	객관식	08:30	09:00~10:15(75분)
2교시	1. 언어발달장애(35) 2. 조음음운장애(35)	70	객관식	10:35	10:45~11:50(65분)

▶ 합격기준

가. 합격자 결정

- (1)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붙임 1] 교과목 이수 확인서(2016.02.23. 적용)

교과목 이수 확인서			
학번 _____		이름 _____	
국가자격증 시험 관련 필수 과목 (모든 과목을 이수하여 함)			
과목명	이수 유무	과목명	이수 유무
신경언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발달장애		언어재활현장실무	
유창성장애		언어재활관찰	
음성장애		언어진단실습	
조음음운장애		언어재활실습	
총 이수 과목(/10)			
선택 과목 (9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과목명	이수 유무	과목명	이수 유무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언어재활	
다문화와 의사소통		의사소통장애개론	
말과학		의사소통장애상담	
보완대체의사소통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삼킴장애		재활학	
언어기관해부생리		청각학	
언어발달		특수교육학	
언어학		심리학개론	
문제행동언어재활		구개열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말운동장애	
청각장애언어재활			
총 이수 과목(/23)			
위 학생은 위의 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_____년 _____월 _____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학과장 (인)			

[붙임 2-1] 임상실습 및 논문 프로포절 자격 관련 행사 참석확인서(학과장 확인용)

[] 임상실습 및 논문 프로포절 자격 관련 행사 참석확인서

학과장 _____

인

_____기 (_____ 입학)		행사명	진전보고회	논문프로포절1	논문프로포절2	논문심사
		일 시				
		장 소				
No	학번	이름	확인	확인	확인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본 기수의 학생들은 위와 같이 학과 내 실시되는
임상 실습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자격 관련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붙임 2-2] 임상실습 및 논문 프로포절 자격 관련 행사 참석확인서(학과사무실 보관용)

임상실습 및 논문 프로포절 자격 관련 행사 참석확인서

학번 _____

이름 _____

1. 진전보고회				
No	참여학기	일시	확인(서명)	비고
1				
2				
3				
4				
5				
2. 논문 프로포절				
No	참여학기	일시	확인(서명)	비고
1				
2				
3				
4				
5				
3. 논문 심사				
No	참여학기	일시	확인(서명)	비고
1				
2				
3				
4				
5				
<p>본 학생은 위와 같이 학과 내 실시되는 임상 실습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자격 관련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p>				